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3952
등록일자	2015.11.25.
결재일자	2015.11.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장비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직위대리	구청장
정상준	이석만	강현섭	김효길	주윤중	11/26 신연희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결과 보고

■ 소송개요

- 사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처분취소 (사건번호 : 2015누34146)
- 선고일 : 2015. 11. 18.(수) 10:00 (판결문 송부일 : 11. 19)
- 당사자 : 원고(SH공사) / 피고(강남구청장, 변호 법무법인 세광 이종광, 전용규)
- 소송금액 : 10,663,408,490원 (소가 10억원)
- 판결결과 : 2심 원고(SH공사) 청구 기각 (강남구 승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강남구) 패소부분(시설설치비 46억 부과취소)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SH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항소(부지매입비 60억원 부과취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새로운 논리 개발 및 추가 증거 확보로 승소(31억 예산 절감)

■ 향후계획

- 소송 결과 보고 (판결서 접수 5일 이내)
: 청소행정과 →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2과, 기획예산과
- 불변기일 내 상고장 제출 확인 철저 : 예정일 12.3 (판결문 접수 후 14일)
- 소송 최종 확정(SH공사의 상고포기) 시 소송 비용 회수 : SH공사

강 남 구
(청 소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 후 적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2012. 12. 27. 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0,663,408천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담금이 과도하다며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우리구 일부 패소(시설설치비 46억원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한 결과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문(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 유사소송 진행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검토 후 적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결과 보고

세곡 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2012. 12. 27. 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0,663,408천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담금이 과도하다며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우리구 일부 패소(시설설치비 46억원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한 결과임.

1 관련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소송 개요

- 사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처분취소 (사건번호 : 2015누34146)
- 당사자
 - 원고 : SH공사 (변호 법무법인 에이펙스)
 - 피고 : 강남구청장 (변호 법무법인 세광 이증광 변호사, 전용규 변호사)
- 소송금액 : 10,663,408,490원 (소가 10억원)
- 판결결과 : 2심 원고 청구 기각 (강남구 승소)

3 주요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강남구) : 2012. 12. 27.

10,663,408,490원 = 부지매입비(6,067,029,600원) + 시설설치비(4,596,378,891원)



부담금 납부 (SH공사) : 2013. 1. 15.



행정소송 제기 : 1심 (2013. 3. 5. ~ 2015. 1. 13.)

기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06억 중

- 부지매입비 : 60억 (강남구 승소)
- 시설설치비 : 46억 (강남구 패소)



항 소 (2심)

(항소심 : 2015. 2. 9. ~ 2015. 11. 18.)

강남구

SH공사

시설설치비 46억원 부과취소

부지매입비 60억원 부과취소



선 고

(선고일 : 2015. 11. 18.)

- 부지매입비 : 60억 (강남구 승소)
- 시설설치비 : 46억 (강남구 승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강남구) 패소부분(시설설치비 46억 부과취소)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SH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항소(부지매입비 60억원 부과취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심(원심) 주요 쟁점 및 소송 결과 ⇒ 강남구 일부 패소

강남구	SH공사
■ 부담금 : 10,663,408,490원 ≡부지매입비 : 6,067,029,600원 ≡시설설치비 : 4,596,378,891원	■ 부담금 : 3,112,717,982원 ≡부지매입비 : 1,506,758,562원 ≡시설설치비 : 1,605,959,420원
■ 부과기준 ≡소 각 폐기물 : 7.300톤/일 ≡음식물 폐기물 : 6.891톤/일 ≡택지조성원가 : 3,123,519원/m ² ≡산정기준년도 : 2011년	■ 부과기준 ≡소 각 폐기물 : 2.73톤/일 ≡음식물 폐기물 : 3.38톤/일 ≡조성원가 : 1,925,324원/m ² ≡산정기준년도 : 2012년

구분	강남구	에스에이치공사	판결
폐기물 발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기준 산정 - 가정폐기물 원단위 발생량×계획인구수 (사업장폐기물 영향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2006~2007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기준으로 산정 - 주택위주의 해당 택지 특수성 반영 - (가정+비가정)×성상별 구성비 	승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사업지구 역시 KTX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활성화 예상되고, 많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중심의 이 사건 사업지구의 폐기물 발생량을 상업지구 중심의 강남구 전체를 표본집단으로 기준 산출하는 것은 위법 	승소
부지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미확정 상태로 택지사업지구 조성원가 적용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원가 적용하거나 ○ 택지조성원가를 적용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하고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은 부지매입비에 소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비용 제외되어야 함 	승소
시설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인 2011년 기준 시설설치비 산정 - 환경부 표준조례 납부계획서 기준 시점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 - 처분시점으로 할 경우 피고가 자의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조정할 수 있어 원고에게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당해년도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 (2012년 설치시설 평균 또는 2012년 기준 5개년간의 최근 기준 2개시설 시설설치비 평균) ○ 환경부 표준조례는 부과기준이 아님 	패소

□ 2심(항소심) 주요 쟁점 및 소송 결과 ⇒ 강남구 승소

강남구	SH공사
<p>■ 부담금 : 10,663,408,49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 6,067,029,600원 ☞ 시설설치비 : 4,596,378,891원 <p>■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각 폐기물 : 7.300톤/일 ☞ 음식물 폐기물 : 6.891톤/일 ☞ 택지조성원가 : 3,123,519원/m² ☞ 산정기준년도 : 2011년 	<p>■ 부담금 : 7,593,921,025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 3,905,311,655원 ☞ 시설설치비 : 3,688,609,370원 <p>■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각 폐기물 : 7.163톤/일 ☞ 음식물 폐기물 : 4.892톤/일 ☞ 조성원가 : 2,200,126원/m² ☞ 산정기준년도 : 2012년

	강남구	SH공사	판결
폐기물 발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이 기준이 되어야 함 - 납부계획서 제출시점(2011.12.5.)이 기준 ○ 2011년 통계자료는 2013년 이후에야 대외적으로 공표되었으므로, 부과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 기준이 되어야 함 - 부과처분시(2012.12.27.)가 기준 	승소
부지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조성원가 : 3,123,519원/m² - 납부계획서 제출시는 물론 - 부과 전 의견제출시(2012.12.20.)에도 동일한 금액을 원고 스스로 적용 ○ SH공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하였음을 증명 ○ 2013.7.30.에 최종고사된 택지조성원가는 SH공사에서 주장하는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없음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조성원가 : 2,200,126원/m² - 기 제출한 택지조성원가는 2010.4.6.경 추정된 수치이며, -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정치에서 구체적 수치로 재산정 되었으므로, - 부과전 최종 산정된 2,200,126원을 적용해야 함 	승소
시설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인 2011년 기준으로 산정 ○ 처분시점으로 할 경우 피고가 자의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조정할 수 있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함 ○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를 산정 시 오히려 금액이 증가하여 SH공사에 불리함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 산정 - 환경부 표준조례는 부과기준이 아니며, 조례의 당해연도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 2012년 설치시설인 김포자원화센터와 연천자원센터를 기준으로 산출해야함 	승소

➡ 새로운 논리 개발 및 추가 증거 확보로 승소하여 31억 예산 절감

5

향 후 계 획

- 소송 결과 보고 (판결서 접수 5일 이내)
: 청소행정과 →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2과, 기획예산과
- 불변기일 내 상고장 제출 확인 철저 : 예정일 12.3 (판결문 접수 후 14일)
- SH공사에서 상고시 고문변호사 위임하여 대응
- 소송 최종 확정(SH공사의 상고포기) 시 소송 비용 회수 : SH공사

- 붙임. 1. 판결내용(요약)
2. 세부 추진사항
3. 판결문 1부. 끝.

별첨1. 판결내용(요약)

□ 판결내용(요약)

폐기물발생량 → 승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판결)
⇒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근거로 삼은 것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3차 통계조사가 아닌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인용사유 추가 (기존 ①~④)
⑤ 원고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인 ‘20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통계자료는 2012. 12. 27.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되어 2012. 12. 31.에서야 비로소 환경통계정보로 등재되고 2013. 1. 18. 이후 간행물이 제작되어 공표되었으므로 피고가 2012. 12. 27.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통계자료가 아니라 2010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지매입비 → 승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판결)
- 인용사유추가
또한 ~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2.12.20. 다시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택지조성원가를 3,123,519원/㎡로 산출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하였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택지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산출한 택지조성원가 내역에 착오나 오류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2012. 10. 경 다시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는 2,200,126원/㎡로 납부계획서 제출 당시보다 다소 하락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소송수행한 사건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이주대책자 생활기본시설설치비와 용지비 산정 내역 등을 일부 변경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3,123,519원/㎡로 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관계 법령에서 부지매입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납부계획서에서 산출된 택지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하면서 납부계획서 제출 후에 원고가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시설설치비 ⇒ 승소

- ① 관계 법령에서 시설설치비용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례 제7조 문언만으로는** ‘당해연도’가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 그 후 위 사건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704, NH공사)이 2012. 12. 7. 확정되자 2012. 12. 20.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그 의견을 반영하여 201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④ 원고는 위 의견서 제출 당시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⑤ 이에 피고는 납부계획서가 제출된 2011년이 당해연도임을 전제로 시설설치비용을 합계 4,596,378,891원으로 산정한 점, ⑥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있는 **2012년에 수도권 지역에 완공된 폐기물처리시설로는** 김포시자원화센터와 연천군 자원새롬센터가 있는데, 위 시설들의 평균 설치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경우**(주민편익시설 제외) 시설설치비용 합계가 4,657,234,266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시설설치비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김포시자원화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 기계 및 전기 공사비를 제외한 건축, 토목, 배관, 소방 등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잘못된 산정방식과 앞서 배척한 20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한 예상 폐기물량을 적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위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⑦ 따라서 피고가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인 2011년에 완공된 수도권 지역 시설을 기준으로 톤당 설치비용을 산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입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2011년에 완공된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 승소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첨2. 행정소송(1심, 2심) 세부 추진사항

- 2010.04.27.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위치 :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 면적 : 771,121㎡ ○ 예상입주인구 : 11,611인

- 2011.12.05.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11.12.05.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

○ SH공사 ⇒ 강남구 (2,556,875,000원 납부계획)

- 2012.03.2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 검토결과 회신 (강남구 ⇒ SH공사)

○ LH공사 1심판결 결과를 참고하여 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통보
※ 부담금 15,377,203,930원 산출(2012.3.20)

- 2012.11.06.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 위치 :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 면적 : 771,121㎡ ⇒ 770,819㎡ ○ 예상입주인구 : 11,611인 ⇒ 11,650인

- 2012.11.15. LH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 선고 (LH공사 승소)

- 2012.12.1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예정 통보

○ 강남구 ⇒ SH공사
○ LH공사 소송결과를 고려 부담금 11,562,225,650원 부과 예정 통보

- 2012.12.2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예정 의견 제출

○ SH공사 ⇒ 강남구 (5,543,866,801원 납부계획)

- 2012.12.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통보

○ 강남구 ⇒ SH공사
○ 10,663,408,490원 부담금 부과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변경 : 2009 ⇒ 2010
- 입주인구 조정 : 4,450세대(12,015인) ⇒ 4,456세대(11,650인)

2013.01.15. 부담금 납부 (SH공사)

2013.03.05. 행정소송 제기

2015.01.08. 1심 선고 : 원고일부승소(시설설치비 4,596,378,891원 부과취소 후 재부과)

○ 부지매입비 : 6,067,029,600원 (강남구 승소)

○ 시설설치비 : 4,596,378,891원 (강남구 패소)

2015.01.23. 원고 항소장 제출

2015.01.26. 피고 항소장 제출

2015.02.09. 사건 접수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2015.03.09. 피고 준비서면 제출 (강남구)

○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거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함. 부과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처분청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됨

2015.05.26. 원고 준비서면 접수 (SH공사)

○ 원심에서 인정한 시설설치비 외의 부지매입비 60억원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부과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

2015.05.27. 1차 변론기일

○ 재판부 지시사항 : 주요 쟁점은 당해 연도의 의미이므로 피고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재부과하는 내용을 제출하기 바람

2015.06.22. 피고 준비서면 제출 (강남구)

○ 2012년을 기준으로 재부과시 시설설치비가 오히려 증가함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 주민편익시설 제외시 : 60,855,370원 증가

- 주민편익시설 포함시 : 1,555,044,930원 증가

※ 산정대상 : 김포 자원화센터(2012.6.22.완공), 연천군 자원새롬센터(2012.4.20.완공)

□ 2015.07.21. 원고 준비서면 접수 (SH공사)

- 6.22.자 강남구의 준비서면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 부과처분시(2012년)로 기준을 변경할 시
 - 폐기물 발생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 택지조성원가도 2,200,126원이며,
 - 김포자원화센터 시설 설치비를 안분하지 않고 계산하면,
- 부담금은 총 7,593,921,025원이 되어야 함
 - 부지매입비 : 3,905,311,655원
 - 시설설치비 : 3,688,609,370원

□ 2015.07.22. 2차 변론기일 (변론종결)

- 변론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 지정 (2015.09.16. 10:00)

□ 2015.07.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자료 작성 기준일 자료 요청

- 강남구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처 (통계작성부서)
- 2011년 통계자료의 대외 공표일 (불특정 다수인이 통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처리절차 요청

□ 2015.07.24. 한국환경공단 회신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통계팀 ⇒ 강남구
- 2011년 통계자료의 최초 통계 작성일(2012.12.27.), 온라인등재일(2012.12.31.), 간행물 작성 배포일 (2013.1.18.)
⇒ 부과처분 당시(2012.12.27.)에는 2011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았음을 확인

□ 2015.09.02. 피고 준비서면 제출

- 김포 자원화센터 시설 현황 자료에는
 - 기계 및 전기 공사비를 제외한 건축, 토목, 배관, 소방 등 각종 시설설치비용이 소각 시설에만 표시되어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각종 시설설치비용을 음식물류처리시설에 안분해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2012년 통계자료는 2013년 1월 18일 이후에야 간행물 제작이 이루어져, 2012.12.27.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2010년 통계자료를 사용해야 함
- 택지조성원가는 피고가 제출한 납부계획서는 물론, 의견제출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 잘못 산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13호)를 보면 소송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택지조성원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2015.09.14. 원고 준비서면 접수
- 2015.09.15. 피고 준비서면 제출
- 2015.09.15. 변론재개 결정 (법원 직권)
- 2015.09.30. 석명준비명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명령)

- SH공사 : 택지조성원가를 2,200,126원으로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
의견제출시 위 택지조성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 제출
- 강남구 : 택지조성원가를 3,123,519원으로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
사업지구 계획인구를 11,650명으로 산정한 근거를 제출

- 2015.10.13. 피고 준비서면 제출

- 택지조성원가(3,123,519원)는
 -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자체적으로 산정
 - 원고가 최초 제출한 납부계획서는 물론 2012.12.20.경 제출한 의견서에도 동일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
- 계획인구수(11,650명)는
 - 당초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12,015명(세대수 4,450×세대원2.7명)으로 예측
 - 원고가 2012.12.20. 제출한 의견서에 그보다 적은 11,650명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임

- 2015.10.14. 원고 준비서면 접수

-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의거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
- 의견제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0여일에 불과해 재산정 자료를 미처 반영하지 못함

- 2015.10.14. 3차 변론기일 (변론종결)
- 2015.11.18. 선고 (원고 기각 : 강남구 승소)
- 2015.11.19. 판결문 접수